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차해영 의원)

의안 번호	23-28
----------	-------

발의년월일 : 2023. 3. .

발의자 :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김승수, 오욱자, 이상원,
장정희, 한선미

1. 제정이유

채식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의 제공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라. 지원 사업(안 제5조)
- 마. 채식의 날 운영(안 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관계법령

- 1)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 및 제13조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3. 17. ~ 3.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현황 및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보급
 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
 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채식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2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친화적인 식생활 실천)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

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 할 경우
- 관련 조문
 -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보급
 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
 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위생과 황찬나
연 락 처	02-3153-9087